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1196 호 2019. 9. 20.(금)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1046호[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]..... 1

안
내

-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
회
람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 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- 1046호

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

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9. 12.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『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』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였으나,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2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지정방법 : 경쟁방법

2. 금 고 수 : 단수금고(1개)

3. 약정기간 : 3년 (2020. 1. 1 ~ 2022. 12. 31)

4. 신청자격

-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우리 구 관내에 영업점(지점)을 둔 금융 기관

5. 금고의 주요 업무

-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
- 유가증권(수입증지 등)의 출납 및 보관
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

6. 신청 공고 및 제안서 접수

가. 공고 및 관련서류 열람

- 공고 및 열람기간 : 2019. 9. 20.(금) ~ 9. 25.(수)
- 공고장소 :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
- 관련서류 열람 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과(1층 민원실)

나. 신청(제안)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9. 9. 25.(수) 단, 근무시간 내(09:00~18:00)
- 접수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과 (1층 민원실)
- 제출부수 : 신청서 1부, 제안서 12부(원본 1, 사본 11)
- 제출서류
 -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신청서
 -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
-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제출

7.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100점 기준)

-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27점)
-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20점)
-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(21점)
- 금고업무 관리 능력(25점)
-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(7점)
 -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붙임(별표1, 별표2)

8. 심사 · 평가 방법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우리 구 「금고지정심의위원회」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· 평가
-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
 - ※ 면접심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한 후 공정한 평가
-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, 참여한 금융기관의 총점과 순위를 공개 함

9.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

- 구 금고로 지정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.
- 금고신청 시 제안한 금고 협력사업 등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제안사항 준수의무를 약정 시 명시하여야 함
-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포기하거나,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며, 앞으로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0. 1. 1.부터 정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,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고에게 자체 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중도 해지할 수 있음

10. 비용부담

- 금고지정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부담으로 함
- 금고운용을 위한 세입 및 자금배정시스템, 수납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 개발·구축·운영·유지·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

11. 기타

- 신청(제안)서는 우리 구 금고지정 신청안내(제안서 작성요령)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
- 제출된 제안서는 확인 후 봉인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(도장)과 인감 확인서 지참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

[별표 1]

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고
계	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<p>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----- (8) - 국외평가기관(4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</p> <p>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----- (19) - 총자본비율 (안정성, 6점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6점)로 평가 - 고정이하 여신비율 (건전성, 6점) - 자기자본이익률 (수익성, 5점) - 유동성커버리지비율 (유동성, 2점) ◆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. ◆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.</p>	27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<p>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----- (7점)</p> <p>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----- (6점)</p> <p>다. 구에 대한 대출금리----- (4점)</p> <p>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----- (3점)</p>	20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<p>가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----- (7점)</p> <p>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----- (6점)</p> <p>다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8점) ※ 금고지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</p>	21	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<p>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-- (8점) *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</p> <p>나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----- (6점)</p> <p>다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----- (8점)</p> <p>라.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----- (3점)</p>	25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	<p>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----- (5점)</p> <p>나.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----- (2점)</p> <p>*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. “구와의 협력사업”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</p>	7	

[별표 2]

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제3조제1항 관련)**I. 일반원칙**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가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와 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)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한다.

II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**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****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**

-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(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8점)을 평가)
- 평가방법
 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배점
 - 다만,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

-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- 다만,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
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 - 총자본비율(안정성)
 -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 자본비율(안정성 7점)로 평가.
 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
 - 자기자본이익률(수익성)
 - 유동성커버리지비율(유동성)
 - 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
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

-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

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

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

가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

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 방안,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

-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다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

-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,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여 배점
-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
 - ※ 금고지점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
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

가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

- 금고관련 세입·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 - *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

나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다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

-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라.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

-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

-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배점

나.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

-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한 후 배점